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1호)]



2026.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	제출연월일	2026. 8. 14.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문화버스·효도버스·체육관버스 등 각종 셔틀버스를 하나의 노선체계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민의 건강·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이용대상·노선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공시설"의 범위를 행정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구가 설립·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하기관 및 개인·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공공시설 방문자, 보건소·보건지소 방문자,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및 교통약자로 정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함(안 제4조·제5조)

마.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7조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부서 의견 수렴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6. 07. 15. ~ 2026. 08. 04. (20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 별첨

II

검토의견

1. 조례안의 제정 배경

○ 현재 서초구는 구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효도버스’ 5대, 구민의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문화버스’ 5대, 구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2대,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와 양재AI특구 일대에서 근무하는 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양재 AI 특구 셔틀버스’ 3대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 1대 등 총 5가지 분야의 공공 무료 셔틀버스 16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총 소요예산은 1,725,640천원임.

<서초구 무료 셔틀버스 현황>

구분	문화버스	효도버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양재AI특구 셔틀버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2~5호) 어르신행복과(1호)	체육진흥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이용대상 (이용방법)	공공문화시설 이용자	60세 이상 어르신 복지관 이용자	체육관 이용자	AI 특구 종사자 등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운행개시	2018년	2017년	2022년	2026년	2010년
운영노선	5대 (25인승)	5대 (25인승)	2대 (25인승)	3대 (41인승)	1대 (20인승 휠체어버스)
운행시간	월~금: 09~17시	월~금: 09~17시	월~금: 08~19시	월~금: 07~23시	평일: 8:35~17:10
운영형태	위탁 (서초문화원)	위탁 (관내 복지관)	위탁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특구 운영센터)	위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승차인원 (일평균)	56.8명	91.4명	66명	50명(예상)	—

<최근 3년 무료 셔틀버스 사업 소요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문화버스	효도버스	서초체육관	양재SI	한우리
‘26	1,725,640	510,000	563,140	132,000	468,000	52,500
‘25	1,229,640	510,000	537,640	132,000	-	50,000
‘24	1,201,411	510,000	501,060	132,000	-	58,351

○ 한편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 따라 소관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별로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노선이 중복되거나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일부 지역은 교통 사각 지대에 놓이는 등 노선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음.

<서초구 무료 셔틀버스 노선>



※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는 회차별 노선이 달라 노선도에 제외 (특장차, 휠체어 탑승 가능)

- 특히 문화·효도·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이 유사·중복되는 노선¹⁾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양재·내곡·우면권역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반포권역은 타권역 대비 승차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게다가 버스 1대가 단일노선으로 운행되어 배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문화버스는 약 66분, 효도버스는 약 98분,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는 약 60분마다 운행되고 있어 탑승률 저조와 이용객 만족도 저하의 요인으로 분석됨.

<서초구 무료 셔틀버스 노선>

구 분	문화버스	효도버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양재시특구 셔틀버스
운행거리	10km	11.86km	7.4km	6.8km
노선당 소요시간	42분	73분	31.5분	45분
1일 1대당 평균운영횟수	6.6회	4.6회	10회	9회
정류소 수	18개소	16.4개소	11개소	10개소
배차시간	66분	98분	60분	34분
승차인원 (일평균)	56.8명	91.4명	66명	37명

※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는 회차별 노선이 달라 제외
(특장차, 휠체어 탑승 가능)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무료 셔틀버스의 부서별 분산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1) [양재·내곡] 문화버스 5호차, 효도버스 2호차, 서초종합체육관 1호차 등 (중복정류장 4개)
[양재·우면] 문화버스 4호차, 효도버스 3호차, 서초종합체육관 2호차 (중복정류소 4개)
[반포·잠원] 문화버스 1호차, 효도버스 4호차 (중복정류소 8개)

근거를 마련하여 운행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2.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목적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달성 목적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민이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는 조문으로 안 제1조는 서초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음.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은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은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여 교통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두는 조문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두지 않아도 무방함.

- 그러나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특정 조문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공공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지만, “공공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²⁾ 및 「관광진흥법」 제57조³⁾ 등이 있으나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는 서초구에 소재한 행정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초구가 설립·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을 공공시설의 범위로 규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제2호는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무료 셔틀버스의 운영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효도버스’, ‘문화버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양재 AI 특구 셔틀버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 등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운영) 및 제6조(운행방법)

- 현행 셔틀버스는 개별 조례⁴⁾에 근거하여 각 소관부서의 민간위탁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노선, 차량, 인력이 제각각 배치되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에 노선이 중복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안 제3조는 수탁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구청장이 직접 위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셔틀버스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구가 직접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관리하게 되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배차간격을 개선하여 구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내 공공시설의 위치 및 특성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 문화버스(문화관광과) :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 효도버스(복지정책과) :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지원)
 · 서초종합체육관 버스(체육진흥과) :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운영지원)
 · AI버스(일자리경제과) : 「서초구 양재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셔틀버스 운영)

-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통합하려는 셔틀버스는 ‘호도버스’, ‘문화버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이며,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1,279,887천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6년도 예산액 1,205,140천원*(문화버스 510,000천원, 호도버스 563,140천원,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132,000천원)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음.

<비용 추계내역>

- 25인승 기준 셔틀버스 연간 운영 비용에 따른 추계
 - ▶ 차량임차비·인건비·시스템 운영 등 포함 운영비 (초기비용 : 1차년도 90,492천원 반영)
 - ▶ 연간 물가상승률 3%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1차년도 (2027)	2차년도 (2028)	3차년도 (2029)	4차년도 (2030)	5차년도 (2031)	합계
세출	① 인건비 (승무·관리직)	631,065	649,997	669,497	689,582	710,269	3,350,410
	② 차량비 (임차·연료·정비 등)	330,522	340,438	350,651	361,170	372,005	1,754,786
	③ 초기설치비 (도색·기기·앱개발)	90,492	—	—	—	—	90,492
	④ 간접비 (관리비·의류·부세 등)	227,808	218,018	224,559	231,296	238,235	1,139,916
	합 계	1,279,887	1,208,453	1,244,707	1,282,048	1,320,509	6,335,606

- 그러나 무료 셔틀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차량 임차·정류소 관리·홍보물 등을 단일 발주하게 되면 단가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무료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와 함께 자체 버스전용 앱(App)을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으로 앱(App)을 통해 이용객에게 버스 위치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승객 승하

차데이터 등 이용자 빅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관내 교통수요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우리 구 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통합 이용 데이터 분석 기반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선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은 셔틀버스 정류소를 공공시설을 지점으로 운행하도록 하여 셔틀버스가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용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제2항은 노선을 정할 때에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제3항은 셔틀버스는 평일에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운영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이용대상자) 및 제5조(이용료)

- 안 제5조는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체육 등의 활동 활성화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⁵⁾이 있었음.

5)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2939(2025. 9. 1.)]

- 안 제4조는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 제2조제1호각 목에 맞는 공공시설 이용대상자 및 교통약자를 명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다. 구가 설립·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	제4조(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행정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2.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구가 설립·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공공시설은 양재 AI·ICT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관계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에 대해 이용자를 제한하였는데,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대다수가 양재 AI·ICT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 관계자이며, 일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건강·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안 제7조는 기존 셔틀버스 운영에서 나타난 노선의 중복, 권역별 편차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버스 1대가 단일 노선만을 운행하던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공간혁신국장(공공 셔틀버스 업무 담당 국장)을 비롯하여 위촉·임명직 위원으로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노선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됨. 향후 총괄 부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체계 일원화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안별로 관련 분야에 정통한 인재풀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노선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별도 임기를 두지 않고,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이 수시로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안 제8조제1항은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인 부구청장

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을 명시하였고,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 부칙

- 부칙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시행일”이란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의미함.
- 본 조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는 경우 셔틀버스 통합 일원화 추진을 위한 사

전 준비 및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부칙 제2조는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준비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부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시행 전에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셔틀버스 통합 추진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구민 이용에 불편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III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위탁 운영 중인 관내 무료 셔틀버스 운영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향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주민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각 부서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버스 1대가 단일노선으로만 운행되어 배차 간격이 길고, 동일 생활권역에 유사·중복되는 노선

이 다수 존재하며, 관내 특정 지역으로 노선이 편중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청장이 직접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관리·감독함으로써,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중복 노선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 연계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이용객의 승하차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 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내 공공시설의 위치 및 특성, 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행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자치법규의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셔틀버스 운영 체계 통합·이관 과정에서 셔틀버스 이용 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기존에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셔틀버스 운영 예산은 조례가 제정되면 총괄부서로 통합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 나아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